##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51

발의연월일: 2021. 6. 7.

발 의 자:김홍절·김경만·김수흥

박영순 • 박홍근 • 안규백

안민석 • 양기대 • 양정숙

이상헌 · 이학영 · 전용기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표찰을 착용하거나 마스코트를 제작·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수막·표찰·마스코트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면 이를 광범위하게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행위까지 법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4월 국회에 시설물(광고물・

표시물·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바, 조속한 논의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광고물·표시물·상징물 등을 이용한 행위의 금지 및 처벌 범위를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한 정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는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정당·후보자를 나타내는 기호·상징마크 등을 명시한 행위만을 제한 대상으로 함으로써,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을 "선거운동기간 중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성명·사진(그림을 포함한다) 또는 그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기호·상징마크를 명시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를 "인형·마스코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아 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 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 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1. 2. (생략)
-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 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 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 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성명·사진(그림을 포함한다) 또는 그 명칭ㆍ성명 을 나타내는 기호·상징마크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단 삭제>

- 1. 2. (현행과 같음)
- 3. 인형·마스코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 <u>다.</u>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